

제 호

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 :

(법인등록번호:)

2. 대 표 자 :

(생년월일 :)

3. 소 재 지 :
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

직인